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서 특례시의 장에게 이양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항목 지정권한과 평가결과의 공개 권한의 시행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사업평가항목 지정권한 주체에 특례시장 추가(안 제2조제4호 개정)
공익활동지원사업 평가항목 지정권한의 주체에 특례시장을 추가하도록 규정
나. 사업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처와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권한 주체에 특례시장 추가(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개정)

사업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을 특례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특례시장이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사업 평가결과 등의 공개주체와 공개장소, 공개항목에 특례시장과 특례시 단위 추가(제4조)

사업 평가결과 공개의 주체와 공개장소에 특례시장과 특례시를 추가하고, 평가결과 공개항목에 특례시장의 종합의견을 포함토록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한다)가”를 “한다)나 특례시의 장이”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특례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의 종합의견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사업 평가의 항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사업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2조(사업 평가의 항목)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 <u>한다</u>)나 <u>특례시의 장</u> 이 -- -----
제3조(사업 평가의 절차 등) ① (생략)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비영리민간단체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 그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u>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u> 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u>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u>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제3조(사업 평가의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u> ----- -----. ③ <u>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u> 은 -----

따라 비영리민간단체가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의견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결과등의 공개)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가 제출한 사업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이하 “평가결과등”이라 한다)를 다음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평가결과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략)

-----.

제4조(평가결과등의 공개)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특별시의 장은 -----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특별시-----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특별시의 장은 -----

-----.

② -----

-----.

1. ~ 5. (현행과 같음)

6.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의 종합의견	6.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나 특별시의 장의 종합의견
-------------------------------	-------------------------------------